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9 선고 2020가단5293646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복

담당변호사 정태화

피 고 1.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2. D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김완영

3.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드유

담당변호사 임택석

변 론 종 결 2021. 8. 13.

판 결 선 고 2021. 10. 29.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371,07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31.부터, 피고 주식회사 B는 2021. 1. 5.까지, 피고 D은 2020. 11. 23.까지 각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E와 피고 D 사이의 2020. 9. 21.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E은 피고 D에게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9. 21. 접수 제1526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 등

1)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4. 9. 26. F(상호 ‘G’을 사용하는 임대사업자)로부터 서울 서초구 H건물 1층 I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9. 11. 14.까지, 월 차임 원칙적으로 월 순매출액의 14%’ 등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9. 12. 19.경 F와 위 임대차의 임대차기간을 2022. 1. 31.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변경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보증보험 및 연대보증 등

1) 피고 회사는 2020. 1. 21.경 원고(보증보험업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와 사이에 별지 1 기재 내용을 포함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이라고 한다).

2) 피고 D은 그 무렵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고 한다).

다. 원고의 보증보험금 지급 등

- 1) 피고 회사와 F는 2020. 9. 16. 이 사건 임대차를 합의해지하였다.
- 2)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임대차의 해지시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월 차임, 관리비, 원상복구비용이 187,371,078원이다.
- 3) F는 2020. 9. 29.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임대차의 해지시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월 차임 등에서 이 사건 임대차의 보증금 1억 원을 공제한 87,371,078원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의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 4) 원고는 2020. 10. 30. 이 사건 보증보험에 따라 F에게 보증보험금 87,371,078원을 지급하였다.
- 5) 원고가 공시한 지연손해금 적용이율 중 보험금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 적용되는 이율은 연 6%이다.

나. 이 사건 가등기 등

- 1) 피고 D은 2017. 5. 19.경 별지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였다.
- 2) 피고 E은 피고 D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9. 21.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9. 21. 접수 제152686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 3) 이 사건 매매예약 무렵, 피고 D은 무자력 상태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 외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3, 갑 3 내지 6호증, 갑 7, 8호증의 각 1, 2, 갑 10호증의 1 내지 3, 갑 13, 14호증, 을나 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보증보험에 따라 F에게 지급한 보증보험금

상당을 구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D은 이 사건 연대보증에 따라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구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 피고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87,371,07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보증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20. 10. 31.부터, 각 소장 부분이 송달된 피고 회사의 경우 2021. 1. 5.까지, 피고 D의 경우 2020. 11. 23.까지 각 원고 공시의 지연손해금 적용이율 소정의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가부에 관하여

1) 채권자취소권 행사 요건의 충족 여하에 관하여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0다43870 판결 등 참조).

(2) 앞서의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전인 2020. 1. 21. 피고 회사와 이 사건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위 보증보험 계약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던 점, 피고 회사와 F는 이 사건 매매예약 직전인 2020. 9. 16. 이 사건 임대차를 합의해지한 점,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임대차의 해지시까지 월 차임 등으로 187,371,07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위 해지 훨씬 이전부터 월 차임 등을 연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매매예약 후 불과 1개월 남짓 후 원고가 피고 회사를 위하여 보증보험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비록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일응 이 사건 매매예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성부 등에 관하여

(1)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무자력 상태에서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조로 제공하였거나 그 담보제공으로써 무자력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며,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2) 피고 D이 이 사건 매매예약 무렵 무자력 상태였고 이 사건 부동산 외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한편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2호증, 을나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E은 피고 회사의 주주인데 피고 D과 그의 남편 J를 알고 지내던 중 2020. 6.경부터 이 사건 매매예약 무렵까지 피고 D 등에게 3회에 걸쳐 3억 4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 E은 이 사건 매매예약과 가등기 이후에도 피고 D 등에게 금원을 더 대여한 사실, 피고 D은 피고 E에게 위 대여원리금 등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 후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 준 사실이 각 인정된다.

피고 D이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하게 보유하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회사의 주주로서 채권자 중 1인이자 지인인 피고 E에게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한 이 사건 매매예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 중 1인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피고 D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피고 E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

2) 피고 E의 주장 내지 항변 등에 관하여

가) 피보전채권의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1) 피고 E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매예약 일자인 2020. 9. 21.로 원고가 피고 D에 대해 구상금채권을 취득한 2020. 10. 30. 이전이다. 원고는 피고 D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판단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비록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예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이에 반하는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 E 주장의 요지

피고 D이 피고 E에게서 돈을 빌린 동기, 경위, 차용금의 사용용도 등을 감안하면 피고 D과 남편 J는 요식사업을 계속 운영하여 변제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돈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담보를 설정하여 준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면서도 부득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8832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나 을나 4, 5호증의 각 기재로, 피고 D이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목적으로 피고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거나 그와 관련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E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선의의 항변에 관하여

(1) 피고 E의 주장 요지

피고 E은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위 매매예약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같은 취지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의 인정사실과 을나 4, 5호증의 각 기재로, 피고 E의 사해의사 추정을 뒤집고 피고 E이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써 다른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 등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의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으며,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E은 피고 D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소병석

[별지 1]

이 사건 보증보험의 주요 내용 등

보험계약자	피고 회사
피보험자	F(G)
보험가입금액	금 100,000,000원
보험기간	2020. 2. 1. ~ 2022. 1. 31. (731일간)
보증내용	임대차변경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 지급보증
특기사항	구증권 K에 의거 발생된 채무 및 보험기간종료일 익일부터 90일 이내 도래하는 채무도 이 증권의 보험가입금액 범위내에서 보증하며, 구 증권의 보험계약은 소멸함
주계약내용	주계약명 : 임대차계약 (서울 서초구 H건물1층 I호) 계약기간 : 2020. 2. 1. ~ 2022. 1. 31. 계약금액 : 100,000,000원
약관의 주요 내용 (보통약관)	제7조(구상 및 대위) ①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회사는 계약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피보험 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가 계약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 ② 계약자가 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의 상환을 지연할 경우에는 지연손해금과 아래 각 호의 비용을 갚 아야 합니다. ③ 제2항의 지연손해금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 일까지 지체일수에 따라 지급보험금에 회사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 용이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끝.

[별지 2]

부동산의 표시

1. 건물

(1)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명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2) 전유부분의 표시

철근콘크리트구조

제지1층 호 176.73㎡

2. 대지

(1)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 1376㎡

(2)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1376분의 77.42

끝.

